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33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 미반영 사항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안 제12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공개의 청구방법(안 제8조), 공개방법(안 제9조), 공개의
여부 결정(안 제10조)

다. 심의회 기능 신설(안 제14조제2호)

- 안 제9조제5항 내용 중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를
이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공개의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의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 안 제9조제5항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정한다”를 안 제14조제2호로 이기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으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는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

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8.6.]